

증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 4. 9
조례 제96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禮遇)하고 이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증평군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보훈회관의 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등 및 보훈단체의 복리·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인 증평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한다.

1. 보훈단체의 업무 추진
2.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3. 국가유공자등의 예우 등을 위한 행사·회의 등의 개최
4. 국가유공자등의 휴식·편의시설, 모임 장소 등 복리증진
5. 국가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국가유공자등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단체로 한다.

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충북지부 증평군지회
2.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충북지부 증평군지회
3.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충북지부 증평군지회
4.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충북지부 증평군지회
5.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 증평군지회

증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 증평군지회
7.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충북지부 증평군지회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

제6조(보훈회관 이용 자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소재 보훈단체의 회원
2. 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등
3. 그 밖에 제7조에 따라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7조(보훈회관 관리·운영 위탁)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